

9	1,708,500	-	-
10	1,764,900	-	-
11	1,818,900	-	-
12	1,872,500	-	-
13	1,923,700	2,030,200	-
14	1,973,600	2,082,000	-
15	2,021,400	2,131,800	-
16	2,067,700	2,179,900	-
17	2,112,700	2,224,900	-
18	2,154,800	2,268,600	-
19	2,195,900	2,310,400	-
20	2,235,400	2,350,200	-
21	2,272,400	2,388,500	-
22	2,308,200	2,425,000	-
23	2,342,000	2,460,000	-
24	2,374,800	2,493,600	-
25	2,405,700	2,525,300	-
26	2,433,900	2,556,200	2,771,300
27	2,458,100	2,582,100	2,798,600
28	2,481,400	2,606,900	2,824,000
29	2,504,100	2,630,400	2,848,600
30	2,525,800	2,653,300	2,871,800
31	2,547,400	2,675,200	2,893,9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17호, 2011. 1. 10. 공포·시행)되어 공무원의 봉급 등이 인상·조정되고 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의 보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1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 항 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909호

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 지정일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및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토지의 분할·합병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죽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친수구역의 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1.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손실보상·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개요
2. 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탁사업 비용의 조달·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 6.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위치 및 대행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 3. 토지이용 현황

##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위치도

##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친수구역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공급 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적용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로·철도·마리나항만, 수도·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방송·통신시설 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거나 하천을 준설하는 사업

②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후단, 제9조,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수구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본다.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사업의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4. 사업 시행기간
- 5.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 6. 취소 등의 사유

제24조(적정수익)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수익”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나+다+라)\} \times \frac{10}{100}$
<p>가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p> <p>나 :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금액(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p> <p>다 : 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금액(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p> <p>라 : 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금액(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개발비용)</p>

제25조(기금의 조성)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조사, 연구·개발 비용
- 2. 하천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한 지출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2. 법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 3.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친수구역조성사업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에 더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더. 친수구역조 성사업</p>	<p>「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p>	<p>「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p>
-------------------------	---	---

#### ◇제정이유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0421호, 2010. 12. 29. 공포, 2011. 4. 30. 시행)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고,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수구역의 범위(안 제2조)

- 1) 법률에서 하천경계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친수구역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하도록 함.
- 2) 친수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예측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친수구역의 규모(안 제3조)

- 1) 친수구역의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 및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인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2) 국가하천 주변 일정 면적 이상의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안 제5조)

- 1) 친수구역 조성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 단계부터 하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개념 정립이 필요함.
- 2)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과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에 추가함.
- 3)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하천 주변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함.

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에서의 행위허가의 대상(안 제9조)

- 1)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상금을 노린 투기성 개발행위 등으로 예산낭비 및 보상 관련 민원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2)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함.

3) 친수구역 내에서의 투기성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친수구역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안 제24조)

- 1) 법률에서 친수구역개발이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적정수익을 정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할 금액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개발이익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 3)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하여 얻는 적정수익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수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환수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그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이바지함. <법제처 제공>

# 부 령

## ●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을 “근무시간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전일인”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